

제35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코로나19 예방 지침

가. 선수 및 관계자 등 참가자 전원 pcr검사결과 의무제출

* 대회개시 전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 결과(확인서 또는 문자 등) 제출)

(대회개시 일 기준은 소속팀이 대회장에 도착해 경기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일정 기준)
(72시간 이내 검사 결과 제출 대회개시일 2일 전 까지)

* 대회개시일 전 대회장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 팀은 전지훈련 시 제출한 검사결과를 인정하며, 전지훈련 출발 시 협회로 코로나19 음성 확인 결과 제출 및 전지훈련 기간 중 필수 활동 이외의 외부활동 금지. 또한, 협회에서 공지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, 서약내용 위반 시 대한하키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(손해배상청구권)에 의거하여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.

나. 참가자 전원 대회 15일전 일일건강(발열사항) 점검표 및 자가문진표 제출

* 건강점검표 미제출자, 유증상자 대회 참가불가

다. 참가팀 및 관계자 숙소 및 식당예약현황 제출 '21.5.31.'까지

*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초과인원 숙박금지, 식당이용 시 외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별도식사

라.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준수 철저